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532 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: 이광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광성, 최기찬, 김경우, 이병도,

김용연, 정진술, 이승미, 이은주,

채유미, 이세열, 최정순, 이현찬,

김동식 의원 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 동자·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 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

○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·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,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, 시 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의 부과·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(안 제8조 및 별표2)

나.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(안 제3조 별 표1 :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·위치 및 기능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별표와"를 "별표1과"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[별표]를 [별표]]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
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

[별표2]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m²당 사용료(원)	사용기간	비고
노동허브	5,000	1개월	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 현 행

제3조(설치·운영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제3조(설치·운영) -----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

### 〈 신 설 〉

칭·위치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
〈신 설〉	〈신 설〉		

## 〈 신 설 〉

## 개정안

별표1과 --.

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 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 수할 수 있다.

[별표]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 [별표]]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 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전태일 노동복합시설 <u>서울특별시</u>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<b>노동자 복지증진</b>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명 칭	기 능

# [별표2]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 (제8조 관련)

<u>시설명</u>	<u>㎡당</u> 사용료(원)	<u>사용기</u> <u>간</u>	<u>비 고</u>	
<u>노동허브</u>	<u>5,000</u>	<u>1개월</u>	<u>보증금 별도</u> <u>관리비 별도</u>	

#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(사용료의 부과·징수)에 따라 세입 감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- 나. 추계결과 = 379,380천원(연평균 75,876천원)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75,876천원임
  - 추계의 전제
    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  - 노동허브 1개월 사용료 감면액 51천원/m² 전제
  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379,380천원
  - 총비용 = 사용료 감면액

(단위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업계
세입	사용료 감면액(제8조)	△75,876	△75,876	△75,876	△75,876	△ <b>75,87</b> 6	△379,380
	소계(a)	△75,876	△ <b>75,87</b> 6	△75,876	△ <b>75,87</b> 6	△75,876	$\triangle 379,380$
세출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75,876	75,876	75,876	75,876	75,876	379,380

 $\bigcirc$  사용료 감면액 =  $\sum_{i=1}^{5} (\Lambda_{\Re}$  료감면)i

i =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 사용료 감면액 = 75,876천원

≒ 51천원 × 123.98 m² × 12개월

▶ m²당 1개월 사용료 감면액 = 51천원

= 56천원 - 5천원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기준 m²당 1개월 사용료 = 56천원

※ 노동허브 면적 123.98 m²

#### 〈사용료 감면 비용〉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 계
7	사용료 남면액(제8조)	75,876	75,876	75,876	75,876	75,876	379,380

주: 1. 물가상승률 미반영

2.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이정수

**2** 02-2180-7942

e-mail: intezer@seoul.go.kr